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148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
 (2008년 12월 11일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시계획과장 이귀웅)

□ 제안이유

- 지리정보의 갱신비용을 절감하고, 지형·지물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자료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도시계획, 지적관리, 교통체계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지리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.(안 제3조)
- 나. 시장은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 부서에 시스템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)
- 다. 지리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 설치·관리하고,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하도록 함.(안 제5조)
- 라. 지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되,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.(안 제6조)
- 마. 지하시설물의 신설·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현업부서에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 또는 수정하도록 함.(안 제7조)
- 바. 지리정보시스템 전산자료의 관리 및 전산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8조 및 제9조)
- 사. 지리정보의 제공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를 구체적으로 규정함. (안 제10조 및 제11조)
- 아. 지리정보 제공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2조 및 제13조)
- 자. 지리정보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 전산자료 등재를 1주일에서 1개월로 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?	○ 도시개발사업 등 대형사업은 1주일 기간 내에 등재하기가 어려운 실정 으로 기간을 연장하였음.
○ 수도배관공사 등 소형 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등재하여 도면을 시공사에 제공해 시민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기간을 연장한 이유는?	○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등재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대향 공사도 최대 빠른 시일 내에 등재 하도록 조치하겠음.
○ 전기통신공사와 난방공사 등에 지리 정보 이용료 100%를 감면한 이유는 무엇인가?	○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의견을 반영 조치하였음.
○ 지리정보시스템의 유출시 보안문제 해결 방안은 있나요?	○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관리하고 있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수정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기타 **필요한 사항 :** 없 음

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번	안 호	관련 제350호
의 년 _월	결 월일	2008. 12. 11.

제안년월일: 2008. 12. 11.

제 안 자 : 건설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지리정보시스템 전산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등재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지리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제출기한을 일주일을 원칙으로 하고 대규모 공사일 경우에만 3주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.(안 제8조제2항)

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안 제8조제2항중 "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작성, 수정, 삭제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에서는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"를 "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작성, 수정, 삭제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에서는 준공 후 1주일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3주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"로 수정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아 워

수 정 아

제1조 ~ 제7조 생략

제8조 ① 생략

②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작성, ②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작성, 수정, 삭제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수정, 삭제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에서는 준공 후 1개월 이 현업부서에서는 준공 후 1주일이내 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한다. 다만,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자료의 갱신이 어려 | 처리기한 내에 자료의 갱신이 어려 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3주일 범위 있다.

제8조 ③ 생략

④ 생략

제9조 ~ 제17조 생략

제1조 ~ 제7조 원안과 같음 제8조 ① 원안과 같음

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제8조 ③ 원안과 같음

④ 원안과 같음

제9조 ~ 제17조 원안과 같음

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천시에서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(이하 "시스템"이라 한다)의 운영·관리 및 지리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도시기반시설물"이란 도로, 상·하수도, 전기, 통신, 가스, 지역 난방, 지하철,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 물을 말한다.
 - 2. "지리정보"란 지형·지물·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와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.
 - 3. "유관기관"이란 시·구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의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.
 - 4. "도형자료"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한다.
 - 5. "속성자료"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한다.
 - 6. "지하시설물도"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또는 지적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.
 - 7. "전담부서"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지리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 - 8. "현업부서"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의

관리부서와 지형·지물 변화가 있는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.

- 9. "주전산기"란 정보를 저장·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·출력 장치를 말한다.
- 10. "단말기"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·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·출력 장치를 말한다.
- 11. "지리정보유통망"이란 지리정보의 생산자, 관리자,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.
- 12. "사용료"란 지리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인 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.
- 13. "수수료"란 지리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.
- 14. "1도면"이란 도형출력장치(플로터)로 출력된 A1 크기(45cm×55cm)를 말하며, 1도면의 크기가 A1 크기 이하일 경우에도 1도면으로 본다.
- 제3조(지리정보의 활용 등) 시장은 도시계획, 지적관리, 교통체계, 시설물관리 및 재난·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지리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4조(업무의 지정)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에 시스템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
- 제5조(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) ① 지리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는 전담 부서에 설치하여 관리하고,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.
 -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6조(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) ① 지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혐의하여 정한다.
- 제7조(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등) ① 지하시설물의 신설·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.
 - ②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지하시설물도는 「공공측량의 작업규정세부기준」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8조(전산자료의 관리) ① 시스템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.
 - ②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작성, 수정, 삭제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에서는 준공 후 1주일 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최신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규모 공사로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3주일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 - ③ 현업부서에서는 주거환경개선, 재건축, 재개발, 도시환경정비, 산업 및 물류단지조성, 택지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시행업체에게 사업완료 후에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 지형도 및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도면 등의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개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300세대 미만의 재건축 사업으로 지형·지물 변화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④ 전산자료의 자체 갱신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.
- 제9조(전산자료의 제출요구)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10조(지리정보의 제공) ① 지리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리정보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용도의 공공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리정보제공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하며,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④ 시장은 지리정보의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지리정보 유통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11조(지리정보 제공의 제한) ①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지리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반납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리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12조(사용료 등의 징수방법) ① 지리정보를 기록매체(디스켓, 자기 테이프 및 광 디스크 등을 말한다)에 복제하여 제공하는 사용료와 전산출력도면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징수하되, 10원 미만은 절사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·징수하며,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. 이 경우 사용료 및 수수료는 지리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부과·징수한다.
 - ③ 지리정보에 따른 복제용 디스켓·자기테이프 및 광 디스크 등의 구입비용은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정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 - 1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경우
 - 2.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업무에 제공되는 경우 및 교육연구기관의 교육연구용으로 제공되는 경우

- 3.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제1항제3호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- 1. 재난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
- 2. 부천시의 지하시설물(전기, 통신, 가스 및 난방 등을 말한다)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(부천시와 관련 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).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범위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한다.
- 3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
- 4.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, 재해예방, 구급체계 구축 등의 전산화 사업에 제공되는 경우
-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.
- 제14조(지리정보의 보호) 전담부서의 장은 지리정보를 구축·관리 및 활용할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지리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) 전담부서의 장은 지리정보의 멸실 및 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(백업파일을 말한다)을 제작·보관하여야 하며, 전산파일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준용) 지리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를 준용한다.
- 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지리정보 사용료 및 수수료(제12조제1항 관련)

(단위: 원)

7	자 료 명	사용료 및 수수료			
지 형 도		1바이트당 0.1635			
7]	1/1000 이상	1매당 7,000			
타	1/2500 이상	1매당 8,500			
도	1/5000 이상	1매당 10,100			
면	1/5000 미만	1매당 11,600			

[별표 2]

정보제공 사용료 감면율(제13조제3항 관련)

감 면 대 상	감면율
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경우 재난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부천시의 지하시설물(전기, 통신, 가스, 난방 등을 말한다)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	100%
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업무에 제공되는 경우 교육연구기관의 교육연구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・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	50%
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, 재해예방, 구급체계 구축 등의 전산화 사업에 제공되는 경우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	25%

[별지 서식]

접수번호					처리기간	
	지	리정보제공식	신 청 서		7일	
	성 명		주민등록 번 호			
신 청 인	주 소 (연락처)		·	(2)	
사용용도						
	자료종류					
자료제공	위 치					
	도엽번호					
신청내용	축 척		수	량	부	
	제공형태	디스크・디스켓・도	면출력•기	타()	
「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」제10조에 따라 지리정보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		년 월 일				
		신?	청인:		(인)	
부 천 시 정	} 귀하					
첨부서류			사용료 또는 수수료			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천시에서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(이하 "시스템"이라 한다)의 운영·관리 및 지리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도시기반시설물"이란 도로, 상·하수도, 전기, 통신, 가스, 지역난방, 지하철,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.
- 2. "지리정보"란 지형·지물·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와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.
- 3. "유관기관"이란 시·구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의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4. "도형자료"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한다.
- 5. "속성자료"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한다.
- 6. "지하시설물도"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·관리 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또는 지적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

-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.
- 7. "전담부서"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지리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8. "현업부서"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·지물 변화가 있는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9. "주전산기"란 정보를 저장·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·출력 장치를 말한다.
- 10. "단말기"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·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·출력 장치를 말한다.
- 11. "지리정보유통망"이란 지리정보의 생산자, 관리자,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.
- 12. "사용료"란 지리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인 디스 켓이나 자기테이프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.
- 13. "수수료"란 지리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하다.
- 14. "1도면"이란 도형출력장치(플로터)로 출력된 A1 크기(45cm×55 cm)를 말하며, 1도면의 크기가 A1 크기 이하일 경우에도 1도면으로 본다.
- 제3조(지리정보의 활용 등) 시장은 도시계획, 지적관리, 교통체계, 시설물 관리 및 재난·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지리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4조(업무의 지정)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에 시스템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

- 제5조(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) ① 지리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는 전담 부서에 설치하여 관리하고,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.
 -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6조(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) ① 지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- 제7조(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등) ① 지하시설물의 신설·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.
 - ②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지하시설물도는 「공공측량의 작업규정세부기준」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8조(전산자료의 관리) ① 시스템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.
 - ②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작성, 수정, 삭제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에서는 준공 후 1주일 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최신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규모 공사로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3주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- ③ 현업부서에서는 주거환경개선, 재건축, 재개발, 도시환경정비, 산업 및 물류단지조성, 택지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행업체에게 사업완료 후에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및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도면 등의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. 다만, 도로개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300세대 미만의 재건축사업으로 지형·지물 변화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전산자료의 자체 갱신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.
- 제9조(전산자료의 제출요구)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10조(지리정보의 제공) ① 지리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리정보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용도의 공공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리정보제공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하며,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 - ④ 시장은 지리정보의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지리정보 유통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11조(지리정보 제공의 제한) ①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지리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반납하여야 한다.

- ③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리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12조(사용료 등의 징수방법) ① 지리정보를 기록매체(디스켓, 자기 테이프 및 광 디스크 등을 말한다)에 복제하여 제공하는 사용료와 전산출력도면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징수하되, 10원 미만은 절사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·징수하며,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. 이 경우 사용료 및 수수료는 지 리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부과·징수한다.
 - ③ 지리정보에 따른 복제용 디스켓·자기테이프 및 광 디스크 등의 구입비용은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정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 - 1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경우
 - 2.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업무에 제공되는 경우 및 교육연구기관의 교육 연구용으로 제공되는 경우
 - 3.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② 제1항제3호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 - 1. 재난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
 - 2. 부천시의 지하시설물(전기, 통신, 가스 및 난방 등을 말한다)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(부천시와 관련 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).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범위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한다.

- 3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
- 4.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, 재해예방, 구급 체계 구축 등의 전산화 사업에 제공되는 경우
-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.
- 제14조(지리정보의 보호) 전담부서의 장은 지리정보를 구축·관리 및 활용할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지리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) 전담부서의 장은 지리정보의 멸실 및 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(백업파일을 말한다)을 제작·보관하여야 하며, 전산파일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준용) 지리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를 준용한다.
- 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지리정보 사용료 및 수수료(제12조제1항 관련)

(단위: 원)

7	자 료 명	사용료 및 수수료		
7	지 형 도	1바이트당 0.1635		
7]	1/1000 이상	1매당 7,000		
기 타	1/2500 이상	1매당 8,500		
도 면	1/5000 이상	1매당 10,100		
	1/5000 미만	1매당 11,600		

[별표 2]

정보제공 사용료 감면율(제13조제3항 관련)

감 면 대 상	감면율
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경우 재난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부천시의 지하시설물(전기, 통신, 가스, 난방 등을 말한다)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	100%
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업무에 제공되는 경우 교육연구기관의 교육연구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・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	50%
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, 재해예방, 구급체계 구축 등의 전산화 사업에 제공되는 경우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	25%

[별지 서식]

접수번호						처리기간	
	시	리 정 보 제 공 신 청 서		서		7일	
시 쳐 이	성 명			주민등 번	록		
신 청 인	주 소 (연락처)					(2)
사용용도							
	자료종류						
자료제공	위 치						
	도엽번호						
신청내용	축 척				수	량	부
	제공형태	디스크・١	긔스켓・	도면출	럭・기	타()
「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」제10조에 따라 지리정보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
		년	월	일			
			?	신청인:			(인)
부 천 시 장 귀하							
첨부서류				및 및	용료 는 수료		

(현행 조례)

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

제정 2002. 04. 10 조례 제1880호

제1장 총 칙

- 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천시에서 구축한 지리 정보시스템(이하 "시스템"이라한다)의 운영 및 관리와 지리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도시기반시설물"이라 함은 도로, 상·하수도, 전기, 통신, 가스, 지역난방, 지하철,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.
 - 2. "지리정보"라 함은 지형·지물·지명 및 경계등의 위치와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데 여기에 는 각종 도형자료와 그에 관련된 속성자료가 포함된다.
 - 3. "유관기관"이라 함은 시·구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.
 - 4. "도형자료"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지도·도면 및 위성영상 등이 있다.
 - 5. "속성자료"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대장 및 조서 등이 있다.
 - 6. "지하시설물도"라 함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또는 지적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.
 - 7. "전담 부서"라 함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지리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 - 8. "현업 부서"라 함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관리 부서를 말한다.
 - 9. "주전산기"라 함은 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·출력 장치를 말한다.
 - 10. "단말기"라 함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 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.
 - 11. "지리정보유통망"이라 함은 지리정보의 생산자, 관리자,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.
 - 12. "사용료"라 함은 지리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(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)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.
 - 13. "수수료"라 함은 지리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.
 - 14. "1도면"이라 함은 플로터로 출력된 A1크기(45cm×55cm)를 말하며, 1도면의 크기가 A1크기 이하일 경우에도 1도면으로 본다.
- 제3조 (지리정보의 활용 등) 시장은 도시계획·지적관리·교통체계·시설물관리·재난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리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4조 (업무지정)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
- 제5조 (시스템설치 및 관리) ①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설치 관리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.
 - ②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 - ③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

하여야 한다.

- 제6조 (지하시설물 통합관리) ①지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②지하시설물 통합관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- 제7조 (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) ①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는 지하시설물의 신설·변경 또는 폐지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하시설물도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.
 - ②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지하시설물도는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8조 (자료의 관리) ①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 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.
 - ②속성자료와 도형자료의 신규·수정·삭제등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에서는 1주일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내에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③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.
- 제9조 (자료제출요구)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장 지리정보 제공

- 제10조 (자료의 제공) ①지리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리정보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용도의 공공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제공신청서의 제출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는 규칙으로 정한다.
 - ④시장은 지리정보 제공과 활용등의 촉진을 위하여 지리정보유통망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- 제11조 (자료제공 제한) ①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외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.
 - ②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.
 - ③지리정보 자료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12조 (사용료등 징수방법) ①제11조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등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(이하 "사용료등" 이라한다)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 - 1. 지리정보를 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등 별도의 기록매체에 복제하는 사용료는 별표 1에 의하되 10원미만은 절사
 - 2. 지리정보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함.
 - ②사용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·징수하며, 수수료 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.
 - ③사용료등은 정보제공 통보를 받은때에 납부하여야 한다.
 - ④지리정보 복제시 디스켓·자기테이프, 광디스크등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.
- 제13조 (사용료의 감면)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 - 1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
 - 2. 전문기술지원기관이 그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와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
 - 3.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②제1항제3호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 - 1. 재난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

- 2. 정보이용 목적이 상하수도, 전기, 가스, 통신, 송유관, 지역난방등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이용되는 경우
- 3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·출연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4.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, 재해예방, 구급체계 구축등의 전산화 사업에 이용되는 경우
- 제14조 (사용료 감면율)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.

제3장 보안관리

- 제15조 (지리정보 보호) 전담부서의 장은 지리정보를 구축·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공개가 제한 되는 지리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16조 (자료의 안전성 확보 및 복구) 전담부서의 장은 지리정보의 멸실·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(백업화일)을 제작 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화일의 파괴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.
- 제17조 (준용)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.
- 제18조 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<2002. 4. 10 조례 제188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관계법령발췌서〉

ㅇ 國家地理情報體系의 構築 및 活用 등에 관한 法律

- 第2條(定義)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.
 - 1. "地理情報"라 함은 地形·地物·地名 및 境界 등의 位置 및 屬性에 관한 情報를 말한다.
 - 2. "地理情報體系"라 함은 地理情報를 효과적으로 蒐集·貯藏·操作·分析·表現할 수 있도록 서로 有機的으로 連繫된 컴퓨터의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·데이터베이스 및 人的 資源의 結合體를 말한다.
 - 3. "國家地理情報體系"라 함은 管理機關이 構築·관리하는 地理情報體系를 말한다.
 - 4. "地理情報流通網"이라 함은 地理情報의 生産者, 管理者 및 使用者를 서로 連結하는 通信網을 말한다.
 - 5. "管理機關"이라 함은 地理情報를 生産·관리하는 國家機關, 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管理 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을 말한다.
- 第15條(地理情報 데이터베이스의 構築·관리) ①管理機關의 長은 그가 蒐集·生産하는 地理情報를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情報體系의 標準 및 關係法令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構築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管理機關의 長은 그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最新情報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③管理機關의 長은 다른 管理機關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構築·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地理 情報의 閱覽·複製 등 關聯資料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第16條 (相互協力) ①政府는 地理情報를 데이터베이스로 構築·관리하기 위하여 管理機關 상호간 또는 管理機關과 産業界·學界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. ②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管理機關과 産業界·學界 등과의 共同協議機構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第21條 (地理情報 데이터베이스의 複製·販賣 등) ①管理機關의 長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地理情報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複製 또는 刊行하여 販賣 또는 配布하거나 당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出力한 資料를 需要者에게 제공할 수 있다.
 - ②管理機關의 長은 地理情報 데이터베이스로부터 出力한 資料를 이용하는 者로부터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.
 - ③地理情報 데이터베이스로부터 出力한 資料의 이용 節次 및 手數料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